

의안번호	2207803
의 퇴 인	이인선 의원
회 답 일	2025. 2. 17.
추 계 번호	25F050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775억원, 2031년 1,204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,889억원(연평균 97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계	연평균
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3조의2)	-775	-865	-966	-1,078	-1,204	-4,889	-97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의2 (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	-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30. 12. 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3조의2 (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
 -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은 2026~2030년 벤처기업 등에 출자를 한 내국법인에 적용되며 감면효과는 신고시점을 고려하면 2027~2031년까지 발생
-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
 - 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4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,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18~2024년 벤처캐피털 신규투자액 연평균 증가율(11.6%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 - 내국법인의 직접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, 벤처캐피털을 통한 벤처 간접투자 증가와 유사한 수준에서 내국법인의 직접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 개요)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
 - 공제대상자: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벤처기업 출자유한회사, 기금운용법인 등 내국법인
 - 출자(투자) 대상
 - ①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
 - ② 창업·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
 - 공제세액: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%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30. 12. 31.
- (감면실적) 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 법인세 세액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동 감면은 2018년부터 발생하였으며, 벤처투자 확대에 따라 감면실적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

[표 2]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실적: 2018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감면실적	135	172	260	335	676	652	557

자료: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(벤처기업 신규투자 현황) 벤처캐피털을 통한 벤처기업 신규투자액은 3.4조원에서 2024년 6.6조원으로 증가

- 2018~2024년 벤처기업캐피털 신규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1.6%
 - 2021~2022년 신규투자액 급증은 자산시장 호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

[표 3] 벤처기업캐피털 신규투자 현황: 2018~2024년

(단위: 개소,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'18~'24 연평균 증가율
투자받은 기업수	1,399	1,608	2,130	2,438	2,474	2,281	2,494	10.1
투자액	34,249	42,777	43,045	76,802	67,640	53,977	66,315	11.6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2024년 잠정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감면실적이 매년 11.6%씩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,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세액공제액 전망

- 내국법인의 직접 투자액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, 간접투자 증가율(11.6%)을 적용하여 향후 공제액 규모를 추계
-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~2031년에 발생

[표 4]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
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	775	865	966	1,078	1,204

(3) 추계결과

-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775억원, 2031년 1,204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,889억원(연평균 97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계	연평균
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13조의2)	-775	-865	-966	-1,078	-1,204	-4,889	-978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